

RA테스트베드 참여에 대한 약정서

_____ (이하 “참여자”라 한다)와(과) RA테스트베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RA테스트베드의 참여를 위해 관련근거 “2016.11 시행예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안) 제99조와 “금융투자업규정(안) 제4-73조의 2, 2016.8.24,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281[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관련 심의위원회(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사무국 설치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한다

제1조(용어설명)

본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 : 자본시장법 시행령(안) 제99조 제1항 제2호 가 내지 마목 요건 구비여부 확인 등의 심의를 수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2. 사무국 : 심의위원회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곳을 말한다.
3. RA테스트베드 : 심의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지침, 운영 일정 등에 기반 하여 참여자의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이하 “테스트베드”라 한다.
4. 연계기관 : 사무국이 테스트베드 및 공표사이트 운영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 기관을 지칭하며, 사무수탁사(한국예탁결제원), 펀드평가사(제로인) 가 해당된다.
5. 매매관련정보 : 테스트베드 참여계좌의 거래내역(매매·입출금·입출고내역) 및 계좌정보, 자산 내역, 기준가격, 수익률 정보가 해당된다.
6. 수수료 :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테스트베드 참여수수료를 의미한다.

제2조 (테스트베드 참여 신청) ① 테스트베드 참여 신청은 참여자가 본약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테스트베드 참여 신청을 하고 사무국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사무국은 참여자의 신청에 대하여 테스트베드 참여를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참여자가 본 약정서의 위반으로 인하여 이전에 테스트베드 참여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사무국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사무국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전 제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사무국이 판단하였을 경우
5.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③ 사무국은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테스트 참여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에 사무국은 이를 참여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3조 (정보의 이용) ① 참여자는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이 참여자와 '연계기관'에서 '매매관련정보'를 제공받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 [첨부1]의 동의서를 작성 한다.

② 참여자는 사무국이 '매매관련정보'를 심사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4조 (정보의 진위에 대한 책임) 참여자는 '연계기관'에서 제공받은 '매매관련정보'의 정확성을 사무국이 보장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무국이 그 관련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참여자의 의무) ① 참여자는 이 약정과 테스트베드 운용관련 사무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테스트베드 운용 중 공표사이트 공표에 대한 의무는 참여자가 지며, 공표된 정보에 대해서 참여자가 확인 하여야한다.
③ 참여자는 공표된 정보에서 오류 발견 시, '연계기관' 또는 사무국에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며, 진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참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무국은 참여자의 테스트베드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6조(수수료 징수대행) ① 사무국은 수수료를 심의위원회를 대행하여 징수한다.
② 사무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수료 금액과 납부기한을 테스트베드

참여 신청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참여자는 고지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7조(참여자 심사중단) ① 참여자는 언제든지 테스트베드 심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단하더라도 그 이전에 웹사이트에 공표된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참여자에 대한 테스트베드의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참여자가 제2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참여자가 이 약정 또는 제5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참여자가 제6조 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참여자가 테스트베드 정상운영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5. 그 밖에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밀유지) 참여자 및 사무국은 이 약정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성실히 유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공개되었거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면책)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참여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사무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전산장애, 전산오류 그 밖의 IT관련 문제로 인한 손해
2. ‘연계기관’ 또는 참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제10조(분쟁해결) 이 약정과 관련하여 사무국과 참여자간에 분쟁 발생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상호노력하며,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사무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약정유효기간)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참여자의 약정서 서명 후 제출 시부터 테스트베드 탈퇴시까지로 한다.

제12조(특약 사항) ① 참여자는 관련 법령개정 및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본 약정서가 변동 가능함을 인지하며, 추후 변경된 약정서로 재약정 해야 한다.
② 추후 약정서를 변경하는 경우, 서면합의로 진행한다.

신청일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첨부1]

RA테스트베드 이용을 위한 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당사는 RA테스트베드 이용을 위한 참여 신청을 하면서, RA테스트베드사무국이 RA테스트베드의 운영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당사의 신용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용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거래내역(매매·입출금· 입출고내역) 및 계좌정 보, 자산 내역, 기준가격, 수익률 정보	- RA테스트베드 심사 및 웹사이트 공표	테스트베드 참여신청부터 탈퇴시까지

당사는 RA테스트베드사무국이 상기의 내용으로 당사의 신용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참여 신청 접수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상호(또는 명칭) :

대표이사(또는 대표자) :

(인)